
‘1인 시위’ 대응 매뉴얼



2014. 7.

【 목 차 】

I. 목적	1
II. 1인 시위의 개념 및 유형	1
1. 개념	1
2. 유형	2
III. 1인 시위의 특징 및 대응 필요성	3
1. 헌법재판소 1인 시위의 특징	3
2. 대응 필요성	3
IV. 1인 시위 대응 요령	4
1. 기본방향	4
2. 시위 진행단계별 대응 요령	5
1) 1단계 : 기초자료 수집단계	
2) 2단계 : 면담단계	
3) 3단계 : 시위 진단단계	
4) 4단계 : 설득단계	
5) 5단계 : 무대응 단계	
6) 6단계 : 추가 면담 단계	
7)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	
3. 시위 원인별 대응 요령(사례중심)	8
1) 확정결정 등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인 경우	
2) 재판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불공정한 재판진행불만, 재판관련 선처호소 등)	
3) 재판진행이나 확정결정과는 별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4) 신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하는 경우	
5) 결정 선고를 앞두고 또는 예정하여 미리 재판부에 호소하는 차원의 시위를 하는 경우	
6)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재판결과 불만 등)	
4. 시위 유형별 대응 요령	11
1) 단기간 1일 시위자	
2) 장기간 1인 시위자	
3) 변형된 1인 시위자	

- [참고자료]** 1. 1인 시위 기본진단표
2. 1인 시위자 상담일지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안)

I 목적

- 우리 재판소 정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인 시위에 대해 진행 단계별, 원인 및 유형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를 조기에 종결시켜,
- 1인 시위자의 삶의 개선을 지원하고, 우리 재판소의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본 매뉴얼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II 1인 시위의 개념 및 유형

1. 개념

- 1인 시위는 ‘개인(1인)이 공동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서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알리기 위해서 행하는 의사표현의 한 수단’임
- 또한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위는 2인 이상의 ‘다수인’이 모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1인 시위는 이러한 다수인을 전제로 한 시위 금지·신고의무 등 관련 규정의 제한을 피하여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시위로 볼 수 있음

2. 유형

1) 단순 1인 시위

- 개인 또는 특정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1인이 다른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혼자서 자신의 주장이 담긴 피켓, 어깨띠, 머리띠 등을 두르거나 소지하고 일정 장소 또는 일정 거리를 오고 가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말함

2) 변형된 1인 시위

- 통상의 1인 시위는 시작에서 종료까지 혼자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만, 변형된 1인 시위는 시위 참가자들이 적당한 간격을 두는 '인간띠 시위', 여러 명이 교대로 시위를 하는 '릴레이 시위' 또는 서로 다른 단체가 동시다발로 시위를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이 연계된 시위 등을 말함

3) 기타 시위 유형

- 시위 기간에 따라 단기간 1인 시위자와 장기간 1인 시위자로, 시위의 목적에 따라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목적에 국한된 시위, 사회적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시위, 관공서 등 특정기관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1. 헌법재판소 1인 시위의 특징

- 헌법재판소 1인 시위는 사건의 당사자가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억울함이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또는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거나 재판결과에 대한 시정 또는 구제책 마련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과 다른 헌법재판소의 특성, 즉 재판독립의 원칙과 소송절차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시위자들은 정상적인 법적 구제수단으로는 목적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1인 시위 등을 통하여 공연히 재판소와 재판관을 비난하는 등 적법절차를 외면한 채 비정상적인 수단에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시위내용은 다수인의 공동목적 또는 개인의 특정목적 달성을 위한 주장들임

2. 대응 필요성

- 헌법재판소의 1인 시위는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거나, 확정된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만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위자들은 1인 시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담과 대화를 통하여 시위가 올바른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

시위자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소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문 앞이나 주변에서 진행 중인 재판이나 재판의 결과에 대하여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뢰와 재판의 권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민원담당관이나 보안담당자는 1인 시위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상담과 설득을 시도함과 아울러 시위 단계별·원인별·유형별 등으로 구분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종 1인 시위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음

IV 1인 시위 대응 요령

1. 기본방향

- 1인 시위는 원인과 유형별로 적절하게 대응함. 민원담당관은 효과적인 면담을 위하여 가능한 시위자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성실한 상담과 설득을 통하여 시위자가 헌법재판소의 업무나 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시위를 중지할 수 있도록 힘씀. 재판과 관련한 1인 시위는 시위자의 삶을 소모시킴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재판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시위를 종결시키도록 노력함

2. 시위 진행단계별 대응 요령

1) 1단계 : 기초자료 수집단계

- 처음 2~3회의 시위 시까지는 바로 면담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시위지속 여부를 지켜보면서 피켓, 유인물 등에 나타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주장사실과 관련사건을 파악하도록 함
- * 수집된 기초자료는 비상계획담당관, 민원담당관이 공유
- 시위진행 상황에 따라서 장시간 시위를 하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시위 당일에도 면담을 실시할 수 있음
- ※ 새로운 시위자 출현시 정문근무자는 비상계획담당관, 민원담당관에게 보고

2) 2단계 : 면담단계

- 시위가 지속될 경우, 그날의 시위를 종료한 후에 민원실을 방문토록 하여 가급적이면 별도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함
- 시위자가 방문 시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응대하며, 먼저 시위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진지한 자세로 경청하도록 함
- 수집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사안에 따라 적절한 관심과 공감을 표현함으로써 시위자가 마음을 열도록 하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상담에 임하도록 함
- 만일 시위자가 민원실로의 방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민원 담당관은 시위 현장에서 면담을 실시함

3) 3단계 : 시위 진단단계

- 시위자의 연령, 학력, 직업, 경제여건, 가족환경, 성격유형 등을 파악하여 인성적·행위적 특성을 정의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위자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함
- 시위 경과기간, 이해당사자(공익 또는 사익), 현행 법령과 제도 등 시위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진단이 필요함
- 시위에 대한 해결가능성, 해결의 중요 포인트를 면밀히 고려하고, 선택 가능한 대안들의 우선순위에 결정 등 해결요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시위의 재발가능성, 처리소요기간, 민원처리의 사회적 효과 등 사후이행에 대한 진단도 중요한 사항임

4) 4단계 : 설득단계

- 면담과 진단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면 시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설득하되, 감정대립이나 충고는 피하도록 하며 일방적인 시위 중단 권고 등 시위자가 반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이때는 사안에 따라 사건검색과 결정내용 파악, 시위자가 제시하는 자료열람,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아봄으로써 성의와 노력을 표시하고, 확정된 결정 등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1인 시위로 해결될 수 없음과 재판소업무 및 재판 절차를 설명하여 시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5) 5단계 : 무대응 단계

- 충분한 면담과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위자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시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당분간 추가적인 면담은 실시하지 아니하고 무대응으로 대처함
- 대부분의 시위자는 이 시기에 시위를 중단하게 되며, 시위를 지속하더라도 민원담당관의 시위중단 권유 및 상담 내용을 재고해 보는 등 시위 계속 여부에 대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위자와 민원담당관은 좋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대화와 설득을 위하여 필요함

6) 6단계 : 추가 면담 단계

- 1차 면담 후 일정기간 시위가 지속될 경우, 적당한 시점에 (약 1~2주 사이)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시위자가 위 '무대응 단계' 기간에도 시위를 계속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차적으로 피로해지거나 재판소의 대응을 궁금해 하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이 무렵에 다시 면담을 실시하여 재판의 독립성과 재판소업무의 특수성을 이해시키면서 시위중단을 설득하면 시위의지를 약화시키거나 포기시키는 데 효과적임

7) 7단계 : 지속적인 관찰 단계

- 시위자가 장기적으로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임. 보통 3개월 이상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이며, 시위가 일정한 장소와 시간대로 고정되는 규칙적인 형태를 나타냄
- 이러한 시위자들은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재판소에 대한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그 수는 많지 않더라도 시위기간이 비교적 길고 재판소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함
- 이들은 시위의지가 확고하여 약 1~2주에 한차례씩 면담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장기시위자는 오랜 기간 시위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지쳐있거나 고립되어 있으므로 담당자의 면담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장기시위자의 경우 지속적인 면담과 시위중단 권고 및 설득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시위지속 여부를 재고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3. 시위 원인별 대응 요령(사례중심)

1) 확정결정 등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인 경우

- 시위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한 후 확정된 재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시위를 중단할 것을 설득함
- ※ 시위자들은 보통 단기간의 시위 후에 1인 시위로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재판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불공정한 재판진행 불만, 재판관련 선처호소 등)

-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과 소송절차 등을 설명하여 1인 시위로 해결될 수 없음을 시위자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 하고 싶은 말이나 유리한 자료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설명하고 시위중단을 권고함
 - ※ 원만한 상담결과 시위자가 민원담당관의 권고를 수용하면서 시위를 중단하는 법원 사례가 다수 있음

3) 재판진행이나 확정결정과는 별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 헌법재판소나 법원의 재판진행중이나 재판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시위는 해결방법이 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수사 중인 사건에 집중할 것과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함
 - ※ 시위자의 고소사건 및 진정사건이 검찰에서 수사 중이었던 바, 담당자의 꾸준한 대화와 면담으로 법원에서의 시위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4) 신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하는 경우

- 재판진행에 대하여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시위자의 주장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없으므로 시위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재판부에 신속한 결정을 원하는 내용을 서면을 제출할 것을 안내함
 - ※ 비교적 설득이 용이한 경우로써 충분한 면담과 설득으로 시위중단 가능

5) 결정 선고를 앞두고 또는 예정하여 미리 재판부에 호소하는 차원의 시위를 하는 경우

- 재판절차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과 결정선고를 앞두고 시위를 통한 의사표시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설명하고 시위중단을 권고함

※ 자신의 시위가 예정된 결정 선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시위를 중단한 법원의 사례가 있음

6) 장기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시위를 지속하는 경우(재판결과 불만 등)

-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규칙적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1~2주마다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위자가 시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설득하는 것이 필요함

※ 주기적인 면담과 꾸준한 설득으로 시위자의 시위계속의지가 약화되면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

4. 시위 유형별 대응 요령

1) 단기간 1일 시위자

구분	시위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써 비교적 단기간인 경우
시위형태	○ 피켓, 어깨띠, 깃발 등을 손에 들고 있거나 일정한 장소에 세워 두거나 일정 거리를 오가는 행위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음에는 바로 면담을 실시하지 않고 시위주장 내용과 관련사건 등을 파악하며 시위자를 관찰함 ○ 시위가 수차례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시위자를 민원실로 방문하도록 하여 면담을 실시함 ○ 사전에 수집된 자료 등을 기초로 면담하되 시위자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고, 사건검색과 결정문 열람 등으로 관심과 성의를 표시하는 등 시위자에 따라 그에 적합한 성실한 상담으로 시위중단을 설득 함
조치결과	○ 단순 1인 시위자들의 경우, 민원담당관이 성의 있는 면담과 설득을 반복함으로써 장기 시위자로 발전하지 않고 시위를 중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장기간 1인 시위자

구분	3개월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비교적 일정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시위를 하는 경우
시위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시위자의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로 고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 피켓시위 등 단순한 시위형태를 유지하지만 일부 시위자는 상복차림을 하는 등 험오스러운 복장을 하는 경우도 있음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시위자들의 경우 시위의지와 신념이 확고하여 처음부터 무리한 시위중단 권고와 설득은 오히려 거부감을 주거나 역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단기간에 시위를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 1~2주에 한차례씩 지속적인 면담을 실시함 (민원실 또는 시위현장에서 면담을 실시함) ○ 이들에게는 직접적인 시위중단 권고나 설득보다는 재판소의 소송구조와 업무특성을 이해시키고 1인 시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접근방법이 효과적임 ○ 무대응·관망하는 자세로 대응하되 정기적인 면담과 접촉을 지속하고, 향후 효과적인 상담과 설득을 위하여 시위자와 민원담당관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시위자가 재판소에 대한 1인 시위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으로 지속적인 면담과 설득을 실시한 결과 대법원 정문 앞에서의 장기 1인 시위자가 시위를 중단한 사례가 있음

3) 변형된 1인 시위자

구분	인간띠 잇기 시위, 릴레이 시위 등 통상의 1인 시위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
시위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일정한 간격으로 도열하여 시위를 하거나 다수인이 교대로 특정한 장소에 진출하여 시위를 하는 경우 또는 1인 시위라 할지라도 특정인의 실명과 사진 등을 게시·비방하는 등 법에 저촉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대응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문 근무자가 시위현장에 임하여 시위 주장내용과 관련 사건번호 등을 파악하고 피켓과 사진, 현수막 등 시위용품과 현장상황을 사진촬영하여 채증한 후 비상계획담당관 및 민원담당관에게 송부하고 시위 상황을 예의 주시함 ○ 변형된 1인 시위의 경우 시위자를 자극할 염려가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현장에서의 면담은 피하도록 함 ○ 집시법 위반이나 타 법익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상계획담당관을 통하여 2회 사전 경고하고, 불응 시 법적용을 검토하여 행정연구관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관할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함 <p style="text-align: center;"><법적용 가능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명예·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의 피켓 휴대 또는 전단 배포, 구호 제창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 - 타인으로 하여금 수치심 자극 또는 혐오감 유발, 고성방가 등으로 불안감 조성시 경범죄처벌법 - 도로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행위시 도로교통법 제68조 - 군인 아닌 자가 군복 착용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경범죄처벌법 제1조